

의 안 번 호	제 34 호
의결 년월일	1997. . .

의
결
사
항

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 자	사 천 시 장
제출년월일	1997. 10. 21.

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4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1997. 10. 7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공유재산관리조례정비지침(내무부) 및 도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시조례에 아파트형 공장용지,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,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국가경쟁력 10%이상 높이기 대책 일환으로 매각대금을 연5-8%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신설(조례 제21조제7호)
- 공유재산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'96. 6. 30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요율(1,000분의25)과 동일하게 조정(조례 제22조제6항)

3. 법적근거 : 공유재산관리조례정비지침(내무부) 및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,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 단지개발 사업용지,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,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 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제22조중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-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,000분의 25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(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) 제22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 터 적용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1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)		제21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)		
1. ~ 6. (생략)	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설></u>		7. <u>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</u>		
		<u>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, 산업입지</u>		
		<u>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</u>		
		<u>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, 기업활동규제완</u>		
		<u>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</u>		
		<u>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</u>		
		<u>체가 조성한 농공단지, 지방자치단체가 유</u>		
		<u>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</u>		
		<u>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u>		
제2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		제2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)		
① ~ ⑤ (생략)		① ~ ⑤ (현행과 같음)		

현행	개정안
⑥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<u>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</u> <u>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</u> <u>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</u> <u>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</u> <u>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.</u> ⑦ (생략)	⑥ <u>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</u> <u>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.</u> ⑦ (현행과 같음)

조 례

◎ 경상남도 조례 제 2489 호

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

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97년 6월 12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제22조증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,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 사업용지,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,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제2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피부요율은 1,000㎡의 25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피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) 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평가피부요율 또는 사용피부요율 적용한다.

'97年度 公有財産 管理指針

内 務 部

3. 公有財産의 保存 및 事務管理

3-1. 公有財産管理條例 整備

가. 業務概要

- 公有재산관리법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등지례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는바
- 공유재산법령 개정 및 기타시유트 등지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을 당부의 개정준칙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는 업무임

나. 必 要 件

- 공유재산법시행령상의 공유재산제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

구 분	공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1항	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
주거용재산의 사용요율	○ '96. 6. 30 시행령 개정전 - '81. 4. 30이전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등은 1천분의 25 ('90. 6. 30 개정부칙 제2조) - 기타 주거용은 1천분의 50 ○ '96. 6. 30 시행령 개정후 - 주거용은 1천분의 25이상	○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, 000분의 25로 한다. ○ 기타 토지는 1, 000분의 50

○ 개정준칙 : 별첨(○○시·도, 시·군·자치구 공유재산관리
조례중 개정 조례준칙)

○○시·도(시·군·자치구) 공유재산관리조례중
개정 조례준칙

○○시·(시·군·자치구)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22조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을 제29조의 규정에 의한
야과트형 공장,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을 제27조의 규정
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,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
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
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능공단지, 지방자치단체가 유
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
각하는 경우 ※ 개정대상

※ 서울특별시(자치구 포함)는 동조례 제22조제3항제5호를
신설

제2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
1,000분의 25로 한다. ※ 개정대상

제39조의2제1호중 "기타지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하의"를

"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"로 한다. ※ 개정대상 (도, 시, 조례)

※ 서울특별시(자치구 포함)는 동조례 제39조제1호를 개정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)
제23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
연간대부로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.

□ 整備内容

○ 정비대상 : ○○시·도(시·군·자치구) 공유재산관리조례

○ 정비내용

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 인하

현 행		개 정
· '81. 4. 30이전 주거용건물 $\frac{25}{1,000}$ · '81. 4. 30이후 주거용건물 $\frac{50}{1,000}$	⇒	·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는 $\frac{25}{1,000}$

②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완화 (가개정안으로 지방입법조)

· 시외의지역 : 400㎡이하 → 700㎡이하

③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

· 아파트형 공장용지

·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

·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

·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
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